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88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문대림
서미화 · 권철승 · 이춘석
안호영 · 이원택 · 곽상언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u>이전공공기관인 경우 같 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지역 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 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u>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